

고 객 시 설	주관부서	안전관리1팀
고 즉 시 걸	개정일자	2020.08.31
コメレのとな コメマングコ ひりなさし	개정번호	0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절차서	페 이 지	1/8

#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절차서

개정번호	제・개정일자	작성자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
0	2020.08.31	최방환	업무절차서로 최초 제정



고 객 시 설	주관부서	안전관리1팀
고 즉 시 열	개정일자	2020.08.31
기사시요시설 기사고그주지 어디저커시	개정번호	0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절차서	페 이 지	2/8

## 목 차

<u>항 목</u>		<u>페이지</u>
1. 용어정의		3
2. 책임과 권한		3
3. 업무절차		3
3.1 가스공급중	등지 대상 세대/시설	3
3.2 가스공급중	등지 준비물	3
3.3 수용가 방문	문 시 주의사항	4
3.4 가스사용시	설 가스공급중지 절차	4
4. 첨부		6



고 객 시 설	주관부서	안전관리1팀
고 즉 시 열	개정일자	2020.08.31
コスとのこと コスクリタコ ひりみさし	개정번호	0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절차서	페 이 지	3/8

#### 1. 용어 정의

1.1 가스공급중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

1.2 장기부재세대

2회 이상 미점검 세대로 안전점검을 위하여 3회 이상 방문 또는 유무선, 관리소,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부재사유를 확인하여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를 말한다.

1.3 가스공급중지 담당

가스사용시설 담당부서의 가스사용시설 관리담당, 요금담당부서의 요금관리담당, 상황실 근무자, 초기대응반(최초 출동자), 고객센터 직원 등을 말한다.

#### 2. 책임과 권한

- 2.1 가스공급중지 관리팀장
  - 1) 가스공급중지 검토 및 승인
- 2.2 가스공급중지 담당
  - 1) 가스공급중지 관리 및 결과 보고

#### 3. 업무절차

- 3.1 가스공급중지 대상 세대/시설
  - 1) 가스공급중지 예고일까지 안전위해 사항이 미 개선된 세대 또는 시설
  - 2) 안전점검 중 장기 부재세대
  - 3) 산업용 시설로서 전출 및 타연료 사용 등으로 요금담당 부서의 가스공급중지 요청이 있는 세대 또는 시설
  - 4) 가스시설의 변경 또는 철거로 인하여 사용자의 가스공급중지 요청이 있는 세대 또는 시설
  - 5) 화재로 인해 가스시설이 손상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세대 또는 시설
  - 6)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가스공급중지가 필요한 세대 또는 시설
- 3.2 가스공급중지 준비물
  - 1) 가스누출 검지기
  - 2) 기타 공기구(스패너, 시건장치, 시건장치용 공기구, 테프론테이프, 플러그 등)
  - 3) "조작금지 TAG(서식1)"



고 객 시 설	주관부서	안전관리1팀
고 즉 지 열	개정일자	2020.08.31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절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4/8

#### 3.3 수용가 방문 시 주의사항

- 1) 수용가 방문 시
  - 가) 회사에서 규정한 복장과 사원증을 패용한다.
  - 나)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재차 확인하되 수용가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수용가 응답 시
  - 가) JB㈜ 직원임을 알리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다.
  - 나) 방문자는 출입문이 열리기 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거나 세대 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3) 수용가 방문 허락 시
  - 가) 친절하게 인사하며 방문 목적을 재차 설명한다.
  - 나) 야간 불편 사항일 경우 수용가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한다.

#### 3.4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절차

- 3.4.1 「안전위해시설 관리 업무절차서」에 의해 가스공급중지 예고일까지 안전위해사항이 미개선된 시설
  - 1) 가스사용시설 관리담당은 안전위해시설에 대하여 가스공급중지 5일 전까지 예고 후, 미개선 시설에 대하여 가스공급중지 여부에 대해 "가스공급 중지 승인서(서식2)"를 작성하여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한다.
  - 2) 가스공급중지 여부에 관한 승인을 득한 시설은 승인한 날로부터 익일에 현장 확인 후 미개선 시설은 가스공급을 차단한다.
  - 3) 가스계량기 전단밸브에 주소/검침량/부착자/연락처/봉인일을 기록한 후 "조작금지 TAG(서식1)"를 전단밸브 손잡이에 부착한다.
  - 4) 회사는 가스공급을 중지하였을 경우 행정관청(해당 시)에 가스공급중지 사실을 통보한다.
  - 5) 수용가로부터 가스공급중지 시설의 안전위해사항이 개선되었음을 통보 받을 경우, 안전위해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공급을 재개한다.
  - 6) 고객센터가 관리하는 안전위해시설의 중지는 고객센터 운영규정(JBGA-0100)에 의하여 수행한다.
- 3.4.2 정기 안전점검 수행 중 장기부재세대(계량기 실외 세대일 경우)
  - 1) 장기부재세대의 경우 가스공급이 중지될 수 있음 가스공급중지 5일 전까지 세대에 통보한다.



고 객 시 설	주관부서	안전관리1팀
고 즉 시 열	개정일자	2020.08.31
コスとのこと コスクリタコ ひりなさし	개정번호	0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절차서	페 이 지	5/8

- 2) 가스공급중지 후 가스계량기 전단밸브에 주소/ 검침량/ 부착자/ 연락처/ 봉인일을 기록한 "조작금지 TAG(서식1)"를 전단밸브 손잡이에 부착한다.
- 3)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가스공급을 재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 한다.
- 4) 고객센터가 관리하는 안전위해시설의 중지는 고객센터 운영규정(JBGA-0100)에 의하여 수행한다.
- 3.4.3 산업용 시설로서 전출 및 타 연료 사용 등으로 요금담당 부서의 가스공급중지 요청이 있는 세대 또는 시설
  - 1) 가스사용시설 관리담당은 요금담당 부서로부터 산업용 시설의 가스공급중지 요청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배관 내 가스퍼지 및 정압기 시건조치 등)를 실시한다.
  - 2) 가스계량기 전단밸브에 주소/ 검침량/ 부착자/ 연락처/ 봉인일을 기록한 "조작금지 TAG(서식1)"를 전단밸브 손잡이에 부착한다.
- 3.4.4 가스시설의 변경 또는 철거로 인하여 사용자의 가스공급중지 요청이 있는 세대 또는 시설
  - 1) 「도시가스공급규정\_충남도(JBAB-0100) 」 (세종시의 경우 「도시가스공급규정\_세종시(JBAB-0200) 」)의 "가스사용 중지(폐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자로부터 접수하여 관련팀에 통보한 후 관련업무를 확인 한다.
    - 가) 영업담당팀
      - 계약현황 변경여부, 폐지 사유(가스사용중지(폐지) 신청서)
    - 나) 요금담당팀
      - 미납요금 수납여부
    - 다) 가스사용시설 관리팀
      - 가스시설 변경 관련 협의 여부
      - 철거에 따른 위험작업 방법
    - 라) 공급시설팀
      - 대지경계 배관 철거 요청(해당 시)
    - 마) 공사담당팀
      - 철거관련 서류를 공사담당팀에 요청하면 인허가 업무 수행(해당 시)
    - 2) 가스사용시설 관리담당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
      - ※ 위험작업 필요 시, 해당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3.4.5 화재로 인해 가스시설이 손상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세대 또는 시설
  - 1) 화재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담당자 혹은 직원은 세대 내 화재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가스공급 시 가스누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가스공급을 중단한다.



고 객 시 설	주관부서	안전관리1팀
고 즉 시 열	개정일자	2020.08.31
コスルのとく コスマングログボル	개정번호	0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절차서	페 이 지	6/8

- 2) 화재로 인해 세대 내 가스시설이 손상되어 배관 및 연소기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세대주와 연락을 한 후 가스공급중지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 후 계량기 전단밸브(필요 시 입상밸브 등 해당시설의 메인밸브)를 시건조치 한다.
- 3) "조작금지 TAG(서식1)"에 주소/ 검침량/ 부착자/ 연락처/ 봉인일을 기록하 여 전단밸브 손잡이에 부착한다.
- 4) 일부 연소기의 가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 조사 등 관련기관의 조사가 끝난 경우에 한하여 연소기 전단에 플러그 마감조치를 실시하고 가스공급을 재개한다.
- 5) 화재로 손상된 배관 및 연소기의 복구 또는 신규설치 시에 점검 확인 후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
- 3.4.6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가스공급중지가 필요한 세대 또는 시설
  - 1) 전결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중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세대 또는 시설에 대해 가스공급중지 5일 전까지 통보한다.

(단, 고의적 가스시설 손상 시 공급중지 조치 후 보고한다.)

2)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조작금지 TAG(서식1)"에는 주소/ 검침량/ 부착자/ 연락 처/ 봉인일을 기록하 여 전단밸브 손잡이에 부착한다.

#### 4. 첨 부

- 4.1 서식
  - 1) 조작금지 TAG
  - 2) 가스공급중지 승인서【끝】



고 객 시 설	주관부서	안전관리1팀
고 즉 시 열	개정일자	2020.08.31
コストロのエス コスマンション ひしみさし	개정번호	0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절차서	페 이 지	7/8

서식 1

### 조작금지 TAG







고 객 시 설	주관부서	안전관리1팀
고 즉 시 골	개정일자	2020.08.31
가스시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절차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8/8

서식 2

# 가스공급중지 승인서

결	팀	원	팀	장	본부장
재					

가스사용시설 가스공급중지 업무표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위해 시설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중지하고자 하오니 성	응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I다.		
	- 다	<u> </u>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연락처			
소 재 지					
1차 개선권고일	2차 개선권고일	공급중지 예고장	공급중지 예정일		
		발부일			
안전위해사항					
특기사항					
<b>コハバ</b> 台					
되어기기					
전결권자					
지시사항					